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7
------	-----

2019. 4. 25.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29일, 권영희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4.25.) 상정, 검토보고, 의결(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권영희 의원)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으로만 규

정되어 서울시의 직접 수행, 보조금 지원 방식을 추가로 규정하고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나.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7조).
- 다.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방식을 확대해 현행 사업의 추진 방식과 입법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 현황(안 제6조와 안 제7조)

-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서울시의 수요와 지역의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상생적 협력관계의 구축과 상호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과 먹거리, 관광, 축제,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매년 ‘지역상생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18년 ‘지역상생발전 시행계획’에 따르면<sup>1)</sup>, 5개 분야에서 21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매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분석 결과에 따라 일부가 제외되거나 신규로 추가되고 있음.

1) 2019년도 ‘지역상생발전 시행계획’은 수립 준비 중에 있음.

**<2018년 상생교류 협력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연도별 예산					추진방식
	2017		2018	2019	2020	
	예산	결산				
<b>총 계</b>	<b>11,698</b>	<b>9,873</b>	<b>23,814</b>	<b>38,880</b>	<b>53,395</b>	
<b>1. 안전한 먹거리 확보</b>	<b>7,273</b>	<b>5,812</b>	<b>16,943</b>	<b>31,970</b>	<b>46,970</b>	
1-1. 도심형 「농부의 시장」 운영 활성화	712	641	472	472	472	직영(용역)
1-2. 추석 명절 서울장터 운영	500	480	500	500	500	직영(용역)
1-3. 지역 간 전통시장 상호협력 및 공동마케팅 추진	36	30	78	78	78	보조금 지원
1-4. 김장문화제 참여를 통한 부재료 판로개척 협력	1,000	906	920	920	920	직영(용역)
1-5.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	5,025	3,755	14,973	30,000	45,000	보조금 지원
<b>2. 농어촌 체험·교류 활성화</b>	<b>882</b>	<b>787</b>	<b>1,592</b>	<b>1,619</b>	<b>1,634</b>	
2-1. 어린이 농촌유학 체험 및 홍보협력	22	21	22	22	22	직영(용역)
2-2. 지역청소년간 역사·문화 체험교류 추진	400	349	450	450	450	직영(용역)
2-3. 지역 청년간 상호교류 추진	228	208	788	815	830	직영(용역)
2-4. 서울-지역 간 문화·예술분야 상호교류	182	160	182	182	182	직영
2-5. 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50	49	150	150	150	
지역 관광지 홍보	-	-	-	-	-	보조금 지원
서울-타시도간 버스 자유상품 개발운영	50	49	150	150	150	직영(용역)
<b>3. 유희자원 발굴 및 협력활용</b>	<b>2,074</b>	<b>1,935</b>	<b>1,169</b>	<b>2,100</b>	<b>2,100</b>	
3-1. 지역 폐교 활용 자연체험 캠핑장 조성 확대	1,599	1,500	919	2,000	2,000	직영
3-2.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	100	60	100	100	100	직영
3-3. 지역출신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 마련	375	375	-	-	-	직영
3-4.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생태 숲 조성	-	-	150	-	-	조성 완료
<b>4.도농연계 일자리 창출</b>	<b>119</b>	<b>113</b>	<b>120</b>	<b>121</b>	<b>121</b>	
4-1. 도시 중장년층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류협력	1	1	2	3	3	직영(용역)
4-2. 귀농·귀촌 희망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118	112	118	118	118	직영
<b>5. 지속적 소통·협력 체계 구축</b>	<b>1,350</b>	<b>1,226</b>	<b>3,990</b>	<b>3,070</b>	<b>2,570</b>	
5-1.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	-	2,420	1,500	1,000	민간위탁
5-2. 지역상생포럼 구성·운영	250	248	250	250	250	직영
5-2.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인적교류 추진	100	100	320	320	320	직영(용역)
5-4. 지역 재해·재난 복구 및 구호 공동협력	1,000	878	1,000	1,000	1,000	-
5-5. 지역 온·오프라인 홍보 플랫폼 구축	-	-	-	-	-	직영(용역)

- 하지만 상생교류 협력사업이 서울시의 직접 수행, 보조금 지원, 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민간위탁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을 민간위탁 외에도 서울시의 직영, 보조금 사업을 통한 간접 운영 등의 방식을 조례에 추가로 규정해 입법과 현실의 부조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안 제6조와 안 제7조).

#### 다.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협약 체결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18 지역상생발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1년 이전에는 광역자치단체를 위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축제지원 등의 단순협력 방식으로 교류사업이 추진되었음.

#### <서울시의 상생교류 협력체결 현황>

해당연도	협력체결 지방자치단체
2013년 이전(11건)	전남('04.12), 충북('08.07), 경북('08.09), 경남('09.09), 대구('11.06), 수원('12.07), 완주('12.07), 순천('13.02), 충남('13.05), 전북('13.07), 금산('13.11)
2014년 (9건)	완도, 강원, 광주, 정읍, 포천, 진안, 함평, 고창, 거창

2015년 (11건)	제주도, 고령, 철원, 남해, 영월, 대전, 담양, 장흥, 강진, 영암, 진주
2016년 (9건)	안동, 양평, 세종, 전주, 가평, 창녕, 영동, 보은, 삼척
2017년 (10건)	광주 광산구, 상주, 나주, 평창, 홍성, 영광, 제천, 원주, 아산, 진천
2018년 (2건)	함양, 부산
2019년 (3건)	고성, 거제, 성주

- 개정안은 서울시와 지역 간의 교류 활성화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협약체결을 명시하고 있음.
- 향후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체결이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간 긴밀한 교류관계를 조성해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할 것임.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7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권영희, 김정환, 이병도, 문장길,  
이광성, 이영실, 박순규, 정진술,  
채유미, 김광수, 송정빈, 채인묵,  
조상호 의원 (13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으로만 규정되어 서울시의 직접 수행, 보조금 지원 방식을 추가로 규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나.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7조).
- 다.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
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
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7. 기타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li> <li>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li> <li>3.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li> <li>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별 사업 추진 및 교육·훈련</li> <li>5. 지역 간 상생협력 세부사업 추진 관련 상담·자문</li> <li>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li> </ol>	<p>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의 발굴 및 모니터링</li> <li>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li> <li>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li> <li>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li> <li>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li> <li>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li> <li>7. 기타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운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p>	<p>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 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p>
<p>제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p>